

□ 코로나19 관련 대상자별 조치사항

※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른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상자 구분은 추후 고지 후, 변동 될 수 있음.

구분		정의	조치
1)확진환자		· 감염이 확인된 자	· 병원 또는 시설격리 치료 ·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·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(수강한 과목의 담당 교원 및 학생들)14일간 자가격리 ·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후, 시설폐쇄 및 방역조치
2)자가 격리 대상자	의사 환자	·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	·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(병의원,자택,시설구분) ·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이송
	조사대상 유증상자 (검사 대상자)	·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·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·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	·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검사 실시 · 격리통지서 미발급 · 검사결과 통보전까지 자가격리 권고와 건강모니터링 · 선별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
	접촉자	· 확진 환자와 접촉한 자	· 자가격리통지서 발급(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) ·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확정 · 건강모니터링
	해외 입국자	·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	·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· 통지서 미발급시, 해외방문 사실 관련 증빙 · 건강모니터링
3)자율보호대상자		· 37.5°C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	· 교내 보건실 코로나19 관련 확인서 발급 · 의료기관 방문권고, 방문시 자차이용, 마스크착용 · 집에서 충분히 휴식 후 3일간 경과관찰 · 건강모니터링
		· 코로나19 검사자와 접촉한 자	· 교내 보건실 코로나19 관련 확인서 발급 · 검사자의 결과 통보 전까지 자가격리 · 37.5°C이상 고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시 선별진료소 방문 · 건강모니터링
		·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(예 : 가족의 접촉자 판정, 가족의 해외입국,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등)	· 교내 보건실 코로나19 관련 확인서 발급 · 37.5°C이상 고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시 선별진료소 방문 · 건강모니터링

- 1)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'에 따른 '입원치료대상자'로 **법률상 입원치료 조치**.
- 2)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, 제47조 제3호, 제49조 제1항제14호'에 따른 '자가격리대상자'로 **법률상 격리 조치**.
- 3) 교육부 '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(2020.04.23.) 및 우리대학 자체기준에 따른 '자율보호대상자'